

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 (2월, 임시회)

** 회의 안내 사항**

- 표결
 - 중앙운영위원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¹
 - 대리 및 참관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²
 - 안건 설명 이후 표결로 넘어가기 전에는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³
 - 표결은 기명투표이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순서: 재석인원 점검 -> 찬성/반대/기권 투표 -> 기권 사유 질의 (가결 시 반대 사유, 부결 시 찬성 사유를 질의할 수 있음)
 - 재석인원 점검: 재석한 중운위원이 zoom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
 - 찬성/반대/기권 투표: 재석인원 점검에 참여한 중운위원만 zoom 채팅창에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입력
※재석인원과 찬성+반대+기권 인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맞을 때 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⁴

- 발언권
 - 회의 진행 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 발언권은 zoom의 손들기 기능이나 채팅창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⁵

0. 회순⁶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의장인사
4. 보고사항
5. 안건심의 순서 확정
6. 안건심의
7. 성원점검
8. 폐회선언

¹ 총학생회칙 제35조 제1항, 의결기구운영세칙 제13조 제1항

² 의결기구운영세칙 제13조 제2항

³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6조

⁴ 의결기구운영세칙 제32조 제4항

⁵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7조(발언권)

⁶ 의결기구운영세칙 제18조(회순)

1. 성원보고

성원은 zoom 접속을 기준으로 함

참관 단위 소개

2. 개회선언⁷

재적: 21

재석: 16

⁷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3. 의장인사

생략⁸

⁸ 의결기구운용세칙 제18조(회순)제2항

4. 보고사항

1) 총학생회 특방 인수인계

- 전임자를 통해 특방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2) 산하기구 공문 양식 안내

- 전학대회 참여자 특방을 통해 공문 양식 및 매뉴얼 배포
- 추후 공문 작성 시 해당 양식 활용 바랍니다

5. 안건심의 순서 확정⁹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의하고자 함

심의안건3

심의안건1

심의안건2

논의안건1(비공개 논의안건)

⁹ 의결기구운용세칙 제23조(안건의 심의)

1.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6. 안건심의¹⁰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 카이스트 백과사전

심의 안건1

[의결문안]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유권해석안을 승인한다.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 기권: 1

가결(O) / 부결()

*기권 사유

부위원장 - 소속 단체(중선관위) 안건이므로 기권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기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도현: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심의 안건2

[의결문안]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을 승인한다.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기권: 1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¹⁰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기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도현: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심의 안건3

[의결문안]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재석: 16/ 찬성:15/ 반대: 0/ 기권: 1

가결(O) / 부결()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용: 찬성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김범준: 찬성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윤정: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기은: 찬성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기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김대욱: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채원: 찬성
새내기학생회장 민지연: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홍유승: 찬성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찬성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찬성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도현: 찬성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유환: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성: 찬성

심의안건3

*수정 내역

1. 단순 오기
2. 부칙

[배경]

학생회칙 제189조, 제191조제4항에 따라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해야하고,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됨

[목표]

1. 의결 시점 ~ 발효 전까지, 5일 간의 공백에 '개정 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2. 가결 전까지의 중선거관위의 활동에 대해 '개정 후 세칙'에 의거하여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해결 방법]

1. 부칙에 일반적 적용례, 경과조치 활용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예비후보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본 세칙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에 대한 적용은 본 세칙의 가결 후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거 부터 적용한다.

*적용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

경과조치: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

2. 부칙에 적용례, 추천인서명의 생략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제2조(적용례) 본 세칙은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인서명의 생략)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의결문안에 추가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수정하여 승인한다. 단,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인서명 생략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7. 성원점검¹¹

¹¹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8. 폐회선언¹²

¹²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